

수원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4963 판결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나14963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6 선고 2020가합40114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피고, 항소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찬이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1. 24.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2. 16. 선고 2020가합401143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지분 목록의 ‘지분’란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같은 목록 ‘소장 부분 송달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피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을 망 T 등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박광서, 판사 차지원

별지